

위한 의견제시의 건

(의안번호 제3128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7. 29.

고성군수

나. 회 부 일 자: 2026. 7. 29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: 2026. 7. 29. 산업경제위원회 상정. 찬성의견

2. 제안설명의 요지(해양수산과장 박은정)

가. 제안사유

- 당동항 정온수역 확보 및 호안보호를 위해 내측방파제(180m) 배치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의견 청취 보고

나. 공유수면매립 개요

- 사 업 명: 당동항 지방어항 개발사업
- 위 치: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당동항 일원
- 시설개요: 내측방파제 180m (매립면적 1,128.8m²)
- 사 업 비: 25억(도비 100%)
- 시 행 자: 경상남도지사

다. 추진경과

- 2023. 8.: 당동항 지방어항 개발계획(변경)수립 착수보고회
- 2024. 4.: 당동항 개발계획(변경)안 확정회의 개최[3차 어촌계 협의]
- 2025 4.~6.: 당동항 사전재해영향성 및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완료
- 2026 7.: 당동항 매립기본계획 반영 매립타당성 결과 회신(해양수산부)

라. 향후계획

- 2026.11.: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(변경) 반영(중앙연안관리심의회)
- 2026.12.: 당동항 개발계획(변경)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
- 2027. 6.: 당동항 개발계획(변경) 수립에 따른 실시설계 완료
- 2027. 8.: 공사 발주

마. 근거법률: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제4항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조호철)

가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당동항의 정온수역을 확보하여 항내 파랑을 저감하고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입·출항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임.
-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매립 타당성 검토,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해양 공간적합성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되고 있으며, 사업비 전액이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정적 부담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
- 내측 방파제 설치를 통해 항만의 안전성이 향상되고, 기상 악화 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지방어항의 기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- 다만,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와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고, 지역 주민과 어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
- 따라서 본 안건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나. 종합의견

- 본 의견제시의 건은 당동항의 안전성 확보와 지방어항 기능 강화를 위

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사항으로,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안건이며, 사업의 필요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6. 7. 29. 찬성의견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